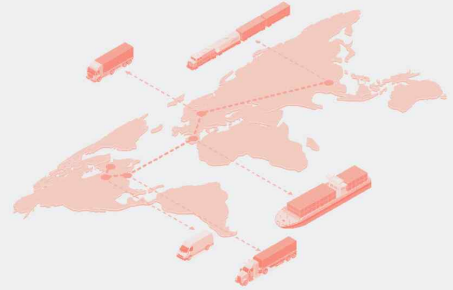




新 EU 집행위원회의 정책 추진 방향

新 EU 집행위원회의 정책 추진 방향



목 차

I. 개요	5
II. 청정산업딜	10
III.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	23
IV. 옴니버스 패키지	28
1. 옴니버스 I - ESG	28
2. 옴니버스 II - 투자	41
[참고] KOTRA 브뤼셀무역관 발간 보고서	43

요 약

□ 新 EU 집행위원회 공식 출범 이후 첫 정책 발표

-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원회('24~'29년)는 '24.12월 공식 출범 이후 출범 100일 내 일련의 정책 발표를 약속했으며, 그 첫 번째로 2.26일에 주요 정책을 발표
 - 新 EU 집행위원회는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의 보고서(드라기 리포트)를 토대로, 향후 5년간 집행위원회가 추진할 정책 이정표인 'EU 경쟁력 나침반'을 발표함('25.1월).
 - '25.2.26일, EU 집행위원회는 청정산업딜,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 옴니버스 패키지(ESG, 투자)를 발표하였으며, EU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간소화에 중점을 둠.
 - 한편, '25.3월 중으로 핵심의약품법, 철강 산업 행동계획, 유럽 방위 백서, AI 팩토리 이니셔티브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EU 경쟁력 나침반' 보고서를 통해 집행위원회의 중점 추진 분야와 세부 추진 일정 확인 가능

□ 2.26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주요 정책 요약

-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 1기 집행위의 '그린딜'을 이어 EU 산업의 탈탄소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정책
 - 유럽 산업 전체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①에너지 비용 안정화, ②청정 기술 시장 선도, ③공공·민간투자, ④순환 경제, ⑤국제협력 확대 및 ⑥공정 전환 등 6대 과제 제시
-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Action Plan on Affordable Energy)
 - 저렴한 에너지 확보가 EU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요건으로 보고, 역대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해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정책 패키지
 - △에너지 가격 인하, △에너지 연합 구축, △투자유치 방안, △ 잠재적 에너지 위기 대비 등 4개의 중심 주제(Pillar)와 8개의 행동(Action)으로 구성
-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 첫 번째 옴니버스 패키지는 CSRD, CSDDD, CBAM 등 ESG 관련 규제 간소화 및 규제 간 조화를 위해 적용 일정의 연기와 적용 범위 변경 등을 담은 집행위원회의 제안(proposal)*으로 적용 대상 기업 수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
 - * 단, 입법 과정에서 변경 사항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입법 동향 지속 모니터링 필요
 - 두 번째 옴니버스는 투자 관련 보고 요건 간소화, Invest EU 규정 개정 등 포함

I 개요

□ EU 집행위원회의 첫 번째 주요 정책 발표

- EU 집행위원회, 공식 출범('24.12월) 이후 첫 주요 정책 발표(2.26)
 - 청정산업딜,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 옴니버스 패키지(ESG, 투자)를 발표하였으며, 특히 옴니버스 패키지에는 기 발효된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의 개정안이 포함됨.
 - 이날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일련의 정책은 EU 산업 경쟁력 제고와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한 규제 간소화에 중점을 둠.
 - * 폰데어라이엔 2기 집행위는 '24.12월 출범식에서 산업계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환경보호와 경제성장 사이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규제 간소화를 약속한 바 있음.
- 집행위원회, CSRD와 CSDDD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일자 개정안을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 신속히 채택할 것을 요청
 - 옴니버스 패키지 중 적용 범위 개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심의 및 채택, EU 관보 게재, 발효 순으로 입법 절차 진행 예정
 - 청정산업딜과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은 新 EU 집행위원회가 향후 5년간 추진할 정책 방향과 세부 계획을 제시

□ EU 집행위의 정책 추진 이정표, EU 경쟁력 나침반

※ EU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1.29), 통신문(1.29), EU 이사회(설명)

- 1.29일 EU 집행위원회는 EU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을 발표, EU 경쟁력 강화를 위한 3대 핵심 과제와 5대 실행 계획 제시
 - 본 계획은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24.9월 발표한 '유럽 경쟁력의 미래(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 보고서를 기반으로 마련, 향후 5년간 집행위원회의 정책 방향과 추진 일정을 확인 가능

<EU 경쟁력 나침반의 3대 핵심 과제와 5대 실행 계획>

구분	내용
3대 핵심 과제	①혁신 격차 해소, ②탈탄소화 및 경쟁력 강화, ③역외 의존도 축소 및 경제 안보 강화
5대 실행 계획	△규제 환경 간소화, △단일시장 내 장벽 제거, △저축·투자연합과 재정 효율화를 통한 자금 확보, △양질의 일자리 및 기술 장려, △역내 정책 조율 개선

<참고 : 경쟁력 나침반의 토대가 된 보고서>

- **(유럽 경쟁력의 미래)**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작성한 보고서로,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한 EU 회원국 간 조율, △EU 차원의 중앙주도형 산업 전략 추진, △에너지 및 디지털 인프라 구축 위한 공공투자 등 포괄적인 경쟁력 강화 방안 포함([24.9월](#))
* 청정기술 육성, 안보 민감 산업 역량 강화, 에너지 집약 산업의 탈탄소화 지원을 위한 보조금 확대 등
- **(단일시장의 미래)** 엔리코 레타 전 이탈리아 총리가 작성한 보고서로, 일 금융시장 구축을 목표로 공적기금 설립, 친환경 전환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포함([24.4월](#))
- **(방위 준비와 대비강화)** 사울리 니니스퇴 전 핀란드 대통령이자 EU 집행위원장의 특별고문이 작성한 보고서로, 역내 위기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민간·군사적 공동 대비 전략 포함([24.11월](#))

- **3대 혁신 과제는 ①혁신 격차 해소, ②탈탄소화 및 경쟁력 강화, ③역외 의존도 축소 및 경제 안보 강화로 구성**
 - ① 혁신 격차 해소 : 미국, 중국 등과 기술 격차 해소 및 혁신 사이클 재개, 미래 산업 발전 촉진(AI, 양자 기술, 생명과학 등), 전 산업의 디지털화(AI 적용 전략, 공공부문 AI 활용 강화 등)
 - ② 탈탄소화 및 경쟁력 강화 : 에너지 가격 안정화, 친환경 방식으로 전환하는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 순환 경제의 성장 잠재력 활용 등
 - ③ 역외 의존도 축소 및 경제 안보 강화 : EU는 역외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줄이고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전략적 자율성을 확대하는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예정
- 이를 위해 △무역협정(FTA) 확대, △공급망 다각화, △불공정 무역 대응, △경제 안보 심화, △공공 조달 개편, △방위 산업 강화 등을 추진

- **5대 실행 계획**은 ①규제 환경 간소화, ②단일시장 내 장벽 제거, ③저축·투자연합과 재정 효율화를 통한 자금 확보, ④양질의 일자리 및 기술 장려, ⑤역내 정책 조율 개선
 - ① **규제 환경 간소화** : EU는 과도한 규제가 유럽 기업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하고, △규제 간소화, △행정절차 신속화를 중심으로 한 개혁 추진
 - ② **단일시장 내 장벽 제거** : 단일시장 내 장애물과 분열을 해소하고 전자 통신·에너지·금융 시장의 통합 가속화 및 방위 단일시장 구축
 - ③ **저축·투자연합과 재정 효율화를 통한 자금 확보** : 투자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우선순위 개혁과 EU 예산 구조 및 배분을 재조정하여 민간 투자 촉진과 격차 해소를 추진
 - ④ **양질의 일자리 및 기술 장려** : EU는 사회 정책을 기반으로 한 노동시장이 유럽 경쟁력 강화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기술과 노동시장 수요간 조화, 노동 시장 참여율 확대, 사회 보장 시스템 현대화 등 추진
 - ⑤ **역내 정책 조율 개선** : 경쟁력 조정 도구(Competitiveness Coordination Tool)를 도입해 회원국별 분산된 산업지원 정책을 EU 차원으로 조율하고, 일관된 체계 구축

<경쟁력 나침반 분야별 추진 내용 및 일정>

분야	내용	발표 시기
혁신 격차 해소	AI 팩토리 이니셔티브 (AI Factories Initiative)	'25.1분기
	스타트업·스케일업 전략 (Start-up and Scale-up Strategy)	'25.2분기
	EU 양자 전략 (EU Quantum Strategy)	
	생명공학 전략 (Life Sciences Strategy)	
	우주법 (Space Act)	

분야	내용	발표 시기
	AI 적용, AI 과학 및 데이터 연합 전략 (Apply AI, AI in Science, and Data Union Strategy)	'25.3분기
	디지털 네트워크법 (Digital Networks Act)	'25.4분기
	양자법 (Quantum Act)	
	EU 혁신법 (European Innovation Act)	'25.4분기~ '26.1분기
	제28째 법적 체계 (28th regime)	
	EU 클라우드 및 AI 개발법 (EU Cloud and AI Development Act)	
	EU 바이오기술 및 바이오경제 전략 (European Biotech Act and Bioeconomy Strategy)	'25~'26년
	유럽 연구 영역법 (European Research Area Act)	'26년 중
	첨단 소재법 (Advanced Materials Act)	
	수평적 기업결합 규제 가이드라인 검토 (Review of the Horizontal Merger Control Guidelines)	-
탈탄소화 및 경쟁력 강화	청정산업딜 및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 2.26일 발표 (Clean Industrial Deal and an Action Plan on Affordable Energy)	'25.1분기
	유럽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위한 전략적 대화 3.5일 발표 (Strategic dialogue on the future of the European automotive industry and Industrial Action Plan)	
	농업 및 식품 비전 (Vision for Agriculture and Food)	'25.2분기
	신규 국가 원조 프레임워크 (New State Aid Framework)	
	해양 협정 (Ocean Pact)	
	지속 가능한 교통 투자 계획 (Sustainable Transport Investment Plan)	'25.3분기
	산업 탈탄소화 가속법 (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	'25.4분기
	화학 산업 패키지 (Chemicals industry package)	
	철강 및 금속 행동계획 (Steel and Metals Action Plan)	'25년 중
	유럽항만 전략 및 산업 해양 전략 (European Port Strategy and Industrial Maritime Strategy)	
고속철도 계획 (High Speed Rail Plan)		

분야	내용	발표 시기
	탄소국경조정제도 검토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Review)	
	기후법 개정 (Amendment of Climate Law)	
	전기화 행동계획 및 유럽 그리드 패키지 (Electrification Action Plan and European Grids Package)	'26.1분기
	순환경제법 (Circular Economy Act)	'26.4분기
역외 의존도 축소 및 경제 안보 강화	유럽 국방 미래에 대한 백서 (White Paper on the Future of European Defence)	
	대비 연합 전략(Preparedness Union Strategy)	'25.1분기
	역내 안보 전략(Internal Security Strategy)	
	핵심의약품법(Critical Medicines Act)	
	수질 복원력 전략(Water Resilience Strategy)	'25.2분기
	중요 원자재 공동구매 플랫폼 (Joint purchasing platform for Critical Raw Minerals)	'25.2~3분기
	지중해 에너지 및 클린테크 협력 이니셔티브 (Trans-Mediterranean Energy and Clean Tech Cooperation initiative)	'25.4분기
	공공조달 지침 개정 (Revision of directives on Public Procurement)	'26년 중
단일시장, 노동·인력, 금융	유럽 기후 적응 계획 (European Climate Adaptation Plan)	
	옴니버스 패키지 2.26일 발표 (Omnibus simplification and definition of small mid-caps)	'25.2.26
	유럽 예금·투자 연합 (European Saving and Investment Union)	'25.1분기
	기술연합 (Union of Skills)	
	단일시장전략 (Single Market Strategy)	'25.2분기
	양질의 일자리 로드맵 (Quality jobs roadmap)	'25.4분기
	유럽 비즈니스 지갑 (European Business Wallet)	
	차기 다년도 재정운용계획 내 경쟁력 기금 및 경쟁력 조정 도구 신설 (MFF, including Competitiveness Fund and a Competitiveness Coordination Tool)	'25년 중
표준화 규정 개정 (Revision of the Standardisation Regulation)	'26년 중	

II

청정산업딜

※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링크](#)), Q&A([링크](#)), 팩트시트([링크](#)), 통신문([링크](#))

□ 개요

- 新 EU 집행위원회('24-'29년), 공식 출범('24.12월) 이후 첫 산업정책인 「청정산업딜 Clean Industrial Deal」 발표(2.26일)
 -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1기 행정부의 '유럽그린딜 European Green Deal'에 이어 탈탄소화 및 EU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
 - EU 산업의 탈탄소화 decarbonise, 재산업화 reindustrialise, 혁신 innovate 등 제시
- 유럽 산업은 높은 에너지 가격,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실존적 도전에 직면
 - '청정산업딜'은 △에너지 집약산업과 △청정 기술에 신속한 지원 및 역내 지속가능성·생산 회복력 강화를 강조
 - 유럽 산업 전체 가치사슬 강화를 위한 ① 에너지 비용 안정화, ② 청정 기술 시장 선도, ③ 공공·민간투자, ④ 순환 경제, ⑤ 국제협력 확대 및 ⑥ 공정 전환 등 6대 과제 제시

□ 주요 내용

1 에너지 비용 안정화

- 유럽 에너지 가격은 산업(특히 에너지 집약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필수 요건으로, 합리적인 가격의 에너지 확보는 '청정산업딜'의 핵심 과제
 - 수입 화석연료의 높은 의존도*와 최근 지정학적 불확실성은 역내 에너지 비용 부담을 높이는 결과 초래

* '22년 EU 역외 수입 에너지 비율 62.5%, 천연가스의 경우 러·우 사태 이전인 '21년 기준 83.5%(자료 : EU 집행위원회)

- EU 전력 시스템의 구조적인 비효율성(예: 불충분한 인프라, 제한적인 시스템 유연성 등)은 에너지 가격을 높이고 저탄소 에너지원 통합을 방해
-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 Action Plan for Affordable Energy*」을 채택하고 단기적으로 에너지 비용을 낮추는 동시에 장기적인 구조 개혁 가속화 조치 마련(2.26일)
- 에너지를 낮추려면 ① 역내 청정에너지 생산 가속화, ② 상호 연결 통한 에너지 시장 완성, ③ 에너지 효율성 강화 필요
- 산업과 관련해서 ① 에너지 비용 절감, ② 청정에너지·전기화 전환 가속화, ③ 가스 시장 기능 보장 등 강조
- (비용절감) 전력 공급 비용 절감은 최근 채택된 「전력시장 설계 Electricity Market Design」의 이행과 에너지 효율 개선부터 시작
- 단기적 변동성이 큰 화석연료의 의존도를 낮추고 기업에 청정에너지 생산 투자 결정요인 제공하기 위해 전력구매계약(PPA)과 차액계약(CfD) 제도* 권장

· (참고) 에너지 시장에서 PPA(Power Purchase Agreement)와 CfD(Contract for Difference)은 발전 기업과 사용자(에너지 기업, 정부 또는 기업) 간 장기 계약 조건 아래 발전·전력 공급 제공

- 유럽투자은행(EIB)과 5억 유로 규모의 「기업 전력구매계약 시범 프로그램 Pilot programme for corporate PPAs」을 시행하고 장기 전력 구매 계약 일부를 복보증 counter-guarantees 형태로 제공(2.26일)
- 또한, EIB는 「그리드 제조 패키지 Grids manufacturing package」를 도입, 부품 제조업체에 15억 유로 규모 보증 제공
- ‘국가 보조금 규정 State aid rules’을 간소화하고, △재생에너지 도입 및 산업 탈탄소화 가속화, △청정 기술 제조 역량 확보, △기술 중립성에 따른 원자력 기술·공급망에 대한 국가 지원 평가(25.6월)

- 그 외, 「PPA와 CfD 결합 가이드라인」, 「국경간 선도 용량 할당 규칙」, 「소매계약 유연성 지침」, 「에너지 과세 지침」 등 추진
- (청정전환) 「산업 탈탄소화 촉진법 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에서 산업 탈탄소화 관련 인허가 단축 및 디지털화
- (가스시장) 원활한 가스 시장 기능을 보장하여 가스 가격 변동성을 완화하고 공급 안정성 확보
- 「가스 시장 태스크포스 Gas Market Task Force」를 구성, EU 천연가스 시장 검토 및 재고 비축 위한 가격 왜곡 관행 방지('25.2월)

<에너지 비용 안정화 관련 입법 추진(안)>

정책① 에너지 비용 안정화	발표 시기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 Action Plan on Affordable Energy	'25년 1분기
가스 재고 비축 규정 개정 Legislative proposal on the extension of the Gas Storage Regulation	'25년 1분기
장기 전력 구매 계약 금융 보증 EIB pilot offering financial guarantees for PPA offtakers, with a focus on SMEs and energy-intensive industry	'25년 2분기
청정산업딜 국가 보조금 프레임워크 Clean Industrial Deal State aid framework	'25년 2분기
네트워크 비용 권고안 Recommendation on network charges	'25년 2분기
산업 탈탄소화 촉진법 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	'25년 4분기
에너지 세금 규정 권고안 Recommendation on energy taxation	'25년 4분기
PPA와 CfD 결합 가이드라인 Guidance on CfD design, including on combining CfDs and PPAs	'25년 4분기
소매계약 유연성 지침 Guidance on promoting remuneration of flexibility in retail contracts	'25년 4분기
유럽 그리드 패키지 European Grids Package	'26년 1분기

[목표]

1. 경제 전반 전기화 비율을 현재 21.3%에서 '30년까지 32% 도달
2. '30년까지 매년 재생에너지 발전 용량 100GW 설치

② 청정 기술 시장 선도

- 청정 기술 및 제품의 수요·공급 촉진 여건을 마련하고 선도적인 시장 창출함으로써, 청정 기술의 경쟁 우위 선점
 - 「산업 탄소 관리전략 Industrial Carbon Management Strategy」을 시행, △EU ETS 지침 검토(26년) 및 △탄소포집·제거 시장 촉진, △소형 모듈 원자로(SMR)개발 및 배치 가속화 등 지원 예정
- (비가격기준) 지속가능성, 복원력, 유럽산(産) 등의 비가격 기준을 조달 정책에 도입하여 공공지출을 탈탄소화·경쟁력 의제로 연계
 - 「산업 탈탄소화 촉진법 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을 제안, 에너지 집약 부문에 지속가능성과 복원력 기준 제시
 - EU산 청정 제품 수요를 강화하고 혁신 촉진을 위함으로 향후, 조달뿐만 아니라 EU 예산 및 국가 지원 프로그램에도 비가격 기준 적용 확대
 - 「공공조달 프레임워크 Public Procurement Framework」개정을 제안하고, 전략 부문 공공조달에서 지속가능성·복원력 및 ‘유럽 선호 European preference’ 기준 적용(26년)
 - 자동차 및 기업 차량용 저탄소 철강, 재생·지속가능한 배터리, 건축법 등 개별 제품 법규에 비가격 기준 포함 여부 검토 예정
- (탄소회계) 포괄적인 수명주기 평가(LCA; Life-Cycle Assessments)* 방법을 개발하고 국가 보조금 및 세제 혜택에 활용
 - * 제품이나 서비스의 전체 수명 주기에 걸쳐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25년 철강을 시작으로 제품의 탄소 집약도를 구분하는 자발적 ‘산업제품 라벨링’을 도입, 시멘트로 제품군 확대 예정
 - ‘탄소회계 방법론’을 개선하고(25.4분기), 탈탄소화 기준 강화

- (저탄소 수소) 에너지 시스템 탈탄소화, 전기화가 어려운 부문에서 수소의 핵심적인 역할을 인정하고 명확한 규제 프레임 제시
 - 「저탄소 수소 관련 위임법 Delegated act on low carbon hydrogen」을 채택하고('25.1분기), 저탄소 수소 생산 방식을 규정
 - 유럽 수소 은행 Hydrogen Bank 산하 「수소 기구 Hydrogen Mechanism」 출범('25.2분기), 배출량 감축이 어려운 산업 부문과 운송 부문에서의 수소 유래 연료 수요 촉진
 - '25.3분기, 10억 유로 규모의 수소 은행 3차 공모 추진
 - 비생물계 재생가능 연료(RFNBO) 위임법을 검토하고, 수소 정책 효과 평가 및 재생 가능 수소 확대 장애 요소 파악

<청정 기술 시장 선도 관련 입법 추진(안)>

정책② 청정 기술 시장 선도	발표 시기
저탄소 수소 관련 위임법 Delegated act on low carbon hydrogen, providing regulatory certainty to producers of low carbon hydrogen	'25년 1분기
산업 탈탄소화 촉진법 Industrial Decarbonisation Accelerator Act	'25년 4분기
기업용 차량의 친환경화에 대한 통신문 및 입법 제안 Communication and legislative proposal on greening corporate fleets	'25/26년
공공 조달 지침 개정(비가격 기준 포함) Revision of Public Procurement Directives to mainstream the use of non-price criteria	'26년 4분기

[목표]

1. EU 시장에서 청정 기술 제품의 역내 생산 비율 40% 달성
2. '청정산업딜'에서 명시한 제품군의 '외부취약성지수(External Vulnerability Index)' 0.19로 감소

③ 공공 및 민간투자

- EU 청정전환 Clean Transition을 위한 대규모 투자는* 필수로, 민간 자본 활용의 중요성 강조
 - * EU 집행위원회는 에너지·산업 및 운송 시스템 연간 투자를 지난 10년 대비 약 4,800억 유로 늘려야 될 것으로 추정
- 민간투자 유치를 위한 △장기적 규제 안정성, △탈탄소화를 위한 공공 인센티브, △효과적인 정책 조정 필요

- **(재원마련)** 현행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FF)에서 10억 유로 추가 보증을 포함, 총 1천억 유로 동원하여 '청정산업딜' 지원 예정
 - 추진 중인 「경쟁력 기금 Competitiveness Fund」은 청정 산업의 지속 가능한 투자를 지원하고 절차 간소화를 통한 기금 접근성 개선
 - 「예금·투자연합 전략 Strategy on a Savings and Investment Union」을 채택, 청정 기술 투자에 민간 자금 동원 촉진
- **(기금 강화)** 기존 및 신규 EU 기금을 활용한 자금 지원 강화
 - EU 혁신기금 Innovation Fund에서 '25년 60억 유로를 투입, 청정기술·배터리 제조·수소 은행 및 산업 탈탄소화 지원
 - STEP 인증 STEP Seal* 프로젝트를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추가 자금 조달 옵션 모색하고 승인 절차 가속화

· **(참고)** STEP 규정에 따라 EU 목표에 기여하는 고품질 프로젝트에 수여되는 인증으로 EU 결속기금, RRF, InvestEU 등 지원 신청 가능

- '산업 탈탄소화 은행 Industrial Decarbonisation Bank'을 제안하고 혁신 기금·ETS 추가 수익·InvestEU에서 1천억 유로 기금 설립 목표
- 주요 산업 공정에 대한 10억 유로 규모의 탈탄소화 경매*를 시범 실시하고 기술 중립적 프로젝트 지원
 - * 산업 탈탄소화 수요와 탄력성 강화 기술에 집중하되, 민감한 주제의 연구 프로젝트에 제3국 참여를 제한함으로써, EU 전략적 이익을 보호할 예정
- '26-'27년 'EU 호라이즌 유럽 기금 Horizon Europe*'에 6억 유로 배치, 연구 혁신(R&I) 프로젝트 파이프라인 구축
 - * 유럽연합 최대 다자간 연구혁신(R&I) 프로그램
- 「핵융합전략 Fusion Strategy」을 제안, 저탄소 에너지원으로 핵융합 지원 및 상용화를 가속화하기 위한 민관 파트너십(PPP) 구축

- **(민간투자) 유럽 민간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주요 도구인 InvestEU 개정 추진**
 - EIB와 협력, InvestEU에 5백억 유로 추가 자금을 동원하여 ‘청정 산업딜’ 신규 이니셔티브와 EU 우선순위 정책*을 지원하고 민간 투자 촉진
 - * 산업 공정의 현대화, 청정 기술의 제조 및 배치, 에너지 인프라 프로젝트, 청정 모빌리티 솔루션, 폐기물 감소 및 재활용 등
 - ‘TechEU’ 투자 프로그램을 배포하고 AI·청정 기술·핵심 원자재·에너지 저장·양자 컴퓨팅·반도체·생명 과학 등 혁신 기술 기업의 규모화와 자금 조달 격차 해소
- **(국가지원) 청정 산업 지원을 위한 회원국 지원 제도 강화**
 - 「청정산업딜 국가 보조금 프레임워크 Clean Industrial Deal State Aid Framework」
 - ‘청정산업딜’ 프로젝트의 민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국가 보조금 규정 규격화 및 간소화
 - 에너지 시스템 탈탄소화 지원을 촉진하고 풍력·태양광 등 특정 기술에 별도 지원 계획 허용
 - 전략적 장비 생산 용량에 대한 투자 규정을 개선하고 배터리 및 재생 가능·청정 기술 제품 제조 지원
 - 기존 ‘국가 보조금 규정’ 간소화 작업의 일환으로, 「일반적용면제 규정(GBER)*」 및 「보증고시 Guarantee notice」 재검토
 - * General Block Exemption Regulation: 국가 지원 시 EU 집행위원회 측에 사전 승인 절차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범위를 규정
 - 신규 IPCEI* 설계 가속화하고 보조금 신청 및 금융 구조화 자문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 유럽공동이익중요프로젝트(Important Project of Common European Interest)

- 「합병평가 지침 Guidelines for assessing mergers」을 개정, 혁신·탈탄소 프로젝트와 현행 규정(예: 반독점 규정 등) 양립가능성에 대한 비공식 지침 제공
- 각국 법인세 등 청정 산업을 지원할 수 있는 세제 권고안 마련
 - 청정 기술 자산의 감가상각 기간 단축, 전략 부문 기업의 세액 공제 등
 - '25년 화석연료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축소·폐지하는 추가 조치와 각종 28번째 법률 체제(28th legal regime) 제안

<공공 및 민간투자 관련 입법 추진(안)>

정책③ 공공 및 민간투자	발표 시기
InvestEU 개정 Increase InvestEU's risk bearing capacity	'25년 1분기
청정산업딜 국가지원 프레임워크 Clean Industrial Deal State aid framework	'25년 2분기
청정산업딜 지원 위한 세제 인센티브 권고 Recommendation to Member States to adopt tax incentives to support the Clean Industrial Deal	'25년 2분기
호라이즌 유럽 장기화 및 확대 추진 Flagship call under Horizon Europe	'25년 2분기
IPCEI 설계 지원 허브 IPCEI Design Support Hub	'25년
혁신기금 내 시범 경매 Pilot auction under the Innovation Fund	'25년
산업 탈탄소화 은행 Industrial Decarbonisation Bank	'26년 2분기
TechEU 투자프로그램 TechEU investment programme on scale-ups with the EIB Group and private sector	'26년
[목표] 산업 전환을 지원하는 총 투자액 규모를 527억 유로 규모로 증대	

4 순환 경제 지원

- 원자재 재사용·재제조·재활용 등 순환성을 강화하여 역외 공급망 의존도를 완화하고 자원 안보 강화
- **(핵심원자재법)** 핵심원자재법*의 신속한 이행을 우선적으로 추진 하고, 첫 '전략적 프로젝트 Strategic Projects 목록' 승인 예정('25.3월)
 - * 친환경 전환에 필요한 전략적 원자재의 역내 생산, 가공,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고 역외 의존도 완화 조치 등을 규정

- 「EU 핵심원자재 전담센터 EU Critical Raw Material Centre」를 설립하고
△원자재 공동구매, △전략적 비축 조정, △공급망 모니터링, △EU 및 제3국 원자재 공급망 투자 위한 금융 상품 설계 추진
- (순환경제) 2차 원료·재사용 가능한 재료·폐기물의 순환성을 촉진하고 주요 제품군에 ‘에코디자인’ 요건 전면 도입
- '26년 「순환경제법 Circular Economy Act」을 채택(작업계획 '25.4월 예정), 단일시장 내 순환적 전환 가속화
 - △2차 원자재 및 폐기물의 역내 자유로운 이동과 △고품질 재생 원료 공급을 촉진하여 원자재 비용 절감, △순환제품 수요 촉진
 - 전자 폐기물에 관한 현행 규정 개정을 통해 스크랩 수요를 촉진하고, 폐기 허가 및 사전 감사 의무화
 - 화석연료 기반 원자재 사용을 억제, 재활용·바이오 기반 및 신규 원료 사용 의무화
 - 법규 마련을 위한 ‘순환성에 관한 청정 산업 대화 Clean Industrial Dialogue on Circularity’ 예정
- ‘핵심원자재법 Critical Raw Materials Act’에 명시된 재활용 목표 25%에 근거한 역내 순환성 및 재활용 촉진
 - △분리수거 시스템 개선, △제3국 간 핵심원자재 수출 상호제한 조치 여부 고려, △순환경제 파트너십 구축, △수출 수수료 도입 여부 평가 등
 - (배터리) 블랙매스 제3국 수출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채택 예정, (비료) 저탄소 비료 또는 재활용 원료로 만든 EU산 비료 장려
- 「지역 순환성 허브 Trans-Regional Circularity Hub」통해 인접국과 관심 있는 경제 주체들 간 협력 및 2차 원자재 공급 투자 대폭 확대
 - 청정 기술용 순환 첨단소재에 대한 신규 IPCEI 설계 지원
- ‘부가가치세 지침 VAT Directive’ 내 중고·재활용 제품의 부가가치세 검토

<순환 경제 지원 관련 입법 추진(안)>

정책④ 순환 경제 지원	발표 시기
핵심원자재법 '전략적 프로젝트 목록' First list of Strategic Projects under the Critical Raw Materials Act	'25년 1분기
에코디자인 작업계획 Ecodesign Work Plan adoption	'25년 2분기
핵심원자재 전담센터 EU Critical Raw Materials Centre for joint purchases and management of strategic stockpiles	'26년 4분기
순환경제법 Circular Economy Act	'26년 4분기
청정 부가가치세 이니셔티브 Green VAT initiative	'26년 4분기
지역 순환성 허브 Trans-Regional Circularity Hubs	'26년 4분기
[목표] 순환 원자재 사용률을 현재 11.8%에서 '30년까지 24%로 확대	

5 국제협력 확대

- 세계 주요 경제국 간 기후 중립을 위한 전략 기술 및 시장, 주요 원자재, 무역 경로 개발과 확보를 위한 경쟁 과열
 - 친환경 전환에 필수인 핵심원자재는 상당수 외부에서 조달되고 있어, 산업 가치사슬 다각화를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중요
 - 특히, EU 시장이 글로벌 과잉 생산량의 역수출처가 되지 않도록 공정 경쟁 환경 조성 필요성 대두
- **(무역협정)** 자유무역협정(FTA)의 지속적인 체결 및 이행을 통한 △전략적 의존성 관리, △글로벌 가치사슬 입지 확보, △무역 및 투자 기회 활용
 - 「청정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CTIP) 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s」 출범('25.3월), EU 대외 조치를 산업 정책 목표와 일치하도록 설계하여 기존 무역협정 보완
 - △글로벌 게이트웨이* 활용, △EU 기업의 해외 시장 동등 대우 환경 조성, △탈탄소화 기준 및 탄소 가격 책정 등 규제 협력
 - * 전 세계 인프라 및 개발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경제적·사회적 연결을 촉진하는 EU의 전략적 이니셔티브

- 「지중해 에너지 및 청정 기술 협력 이니셔티브 Trans-Mediterranean Energy and Clean Tech Cooperation initiative」 통한 공공 및 민간투자 촉진
- **(CBAM)**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간소화하여 산업계 및 공급망 행정 부담을 완화하는 동시에 글로벌 탄소 가격 책정 장려
 - 「포괄적인 CBAM 검토 보고서 Comprehensive CBAM review report」 발표 예정('25년 하반기)
 - EU ETS 부문 및 다운스트림 제품에 대한 CBAM 확대 가능성 평가하고 우회 위험 해결 방안 제시
 - 제3국 수출 상품의 탄소 누출 문제 해결 방안 제안('26년 상반기)
- 「국제 탄소 시장 및 탄소 가격 외교 태스크포스 International Carbon Markets and Carbon Pricing Diplomacy Task Force」 통해 파트너국의 탈탄소화 노력을 지원하고 효과적인 탄소 가격 정책과 국제 탄소 시장 촉진
- **(공정경쟁)** 전략적 부문의 외국인 투자가 유럽의 경제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보장
 - 「EU 외국인 직접투자 심사 규정 FDI screening」을 지속적으로 검토하여, 국가별 격차를 줄이고 포럼 쇼핑 forum shopping* 위험 최소화
 - * 유리한 재판 관할권을 선택하는 것
 - 전략적 부문의 외국인 투자 프로젝트에서 △장비 소유권, △EU 인력 채용, △역내 조달, △합작 투자 및 지적재산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권장
- 기존 「해외 보조금 규정(FSR) Foreign Subsidies Regulation」을 보완하는 가이드라인 채택 예정('26.1월)
 - 단일시장 및 공정 경쟁을 저해하는 위험이 있는 기업결합에 대한 집행위 검토와 전략적 부문의 직권 조사 요건 마련
 - 경쟁력·회복력 및 지속가능성 기준에 따라 필요 시 관세 조정

- 불공정 경쟁과 과잉 생산 수출로부터 EU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무역 방어 수단(TDI; Trade Defence Instruments)을 강화하고 직권 절차 확대 및 조사 기간 단축

<국제협력 확대 관련 입법 추진(안)>

정책⑤ 국제협력 확대	발표 시기
청정 무역 및 투자 파트너십 Launch negotiations for the first Clean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25년 1분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간소화 Simplification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25년 1분기
포괄적인 CBAM 검토 보고서 Comprehensive CBAM review assessing the feasibility of extending the CBAM scope to other EU ETS sectors at risk of carbon leakage, to downstream sectors and to indirect emissions and support to exporters, closing loopholes	'25년 3분기
지중해 에너지 및 청정 기술 협력 이니셔티브 Trans-mediterranean Energy and Clean tech cooperation initiative	'25년 4분기
CBAM 확대 입법 제안 Legislative proposal on an extension of CBAM	'26년 1분기
해외 보조금 규정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Foreign Subsidies Regulation	'26년 1분기

6 공정 전환

- 모든 사람·지역사회·기업이 청정 산업 전환 혜택을 누리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 역량을 강화하는 공정한 전환 약속
- **(기술지원)** EU Erasmus+에서 9천만 유로를 지원, 「기술연합 Union of Skills」, 「기술 이동성 이니셔티브 A Skills Portability Initiative」 추진
- **(전환지원)** 유럽 산업 경쟁력 제고 및 인재 양성 위한 「양질의 일자리 로드맵 Quality Jobs Roadmap」, 「유럽 공정 전환 관측소 European Fair Transition Observatory」 마련
- **(전환혜택)** 청정 전환의 공정한 혜택 분배와 청정 제품 수요 촉진을 위해 무공해 차량, 히트펌프 등의 사회적 임대 가이드라인 개발

<공정 전환 관련 입법 추진(안)>

정책⑥ 공정 전환	발표 시기
기술연합 Union of Skills	'25년 1분기
양질의 일자리 로드맵 Quality Jobs Roadmap	'25년 4분기
친환경 제품의 사회적 임대 가이드라인 Guidance on social leasing for clean products	'25년
유럽 공정 전환 관측소 European Fair Transition Observatory	'26년 1분기
기술 이동성 이니셔티브 Skills Portability Initiative	'26년
국가 지원 일반 적용 면제 규정(GBER) 검토 Review of State aid GBER rules for social enterprises and recruitment of disadvantaged workers	'27년 4분기

7 (기타) 산업별 이행

- 집행위원회는 '청정산업딜'의 효과적인 이행과 EU 산업의 탈탄소화·경쟁력 제고를 위한 '25년 산업별 계획 수립
- (자동차) 기존 추진 중인 '전략적 대화'를 바탕으로 「자동차 산업 행동계획 Industrial Action Plan for an Automotive Sector」 발표('25.3.5일)
 - CO2 배출규제 조정(규정 준수 기간을 '25년에서 '25-27년 평균으로 설정, 3년 유예)
 - 배터리·자율주행 등 역내 산 제품 기술과 생산 역량에 중점을 둔 가치사슬 개선
- (철강) '25.3.4일 출범한 '전략적 대화'를 바탕으로 「철강 산업 행동 계획 Steel and Metals Action Plan」 발표 예정('25.3.19일)
- (화학) 화학 산업의 전략적 역할을 인식하고 「화학 산업 패키지 Chemicals Industry Package」 마련('25년 말)을 통해 경쟁력 강화와 현대화, 역내 생산 및 혁신 지원
- (운송) 「지속가능한 운송 투자 계획 Sustainable Transport Investment Plan」을 마련, 항공 및 해운 부문을 위한 특정 재생·저탄소 연료 지원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중단기 조치 마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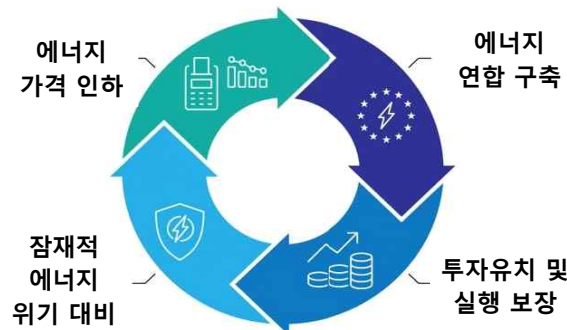
III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

※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Action Plan for Affordable Energy)

: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링크](#)), Q&A([링크](#)), 팩트시트([링크](#)), 통신문([링크](#))

- EU, 저렴한 에너지 확보를 EU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핵심 조건으로 설정하고,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한 정책 패키지 제안
 -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은 청정산업딜의 세부 사업계획으로, EU 집행위원회 역내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한 정책 패키지 제안
 - '22년부터 역내 에너지 가격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EU와 주요 경쟁국 간 산업용 에너지 가격 격차*가 확대되고 있음. 이는 역내 산업 경쟁력 저하와 인플레이션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됨.
 - *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에 대한 통신문에서 EU 집행위원회는 '24년 기준 EU의 산업용 소매 전기가격이 미국, 중국보다 2배 이상 높다고 추정
 - 이에 EU는 산업과 시민을 위한 장·단기적 구조 개혁을 추진하여 역내 에너지 단일시장을 강화하고 에너지 인프라 개선, 투자유치 등의 분야에서 정책적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전략을 수립함.
 -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은 △에너지 가격 인하, △에너지 연합 구축, △투자유치 방안, △ 잠재적 에너지 위기 대비 등 4개 중심 주제(Pillar)와 8개 행동(Action)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정책 대부분을 '25년 동안 실행할 예정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의 4개 중심주제(Pill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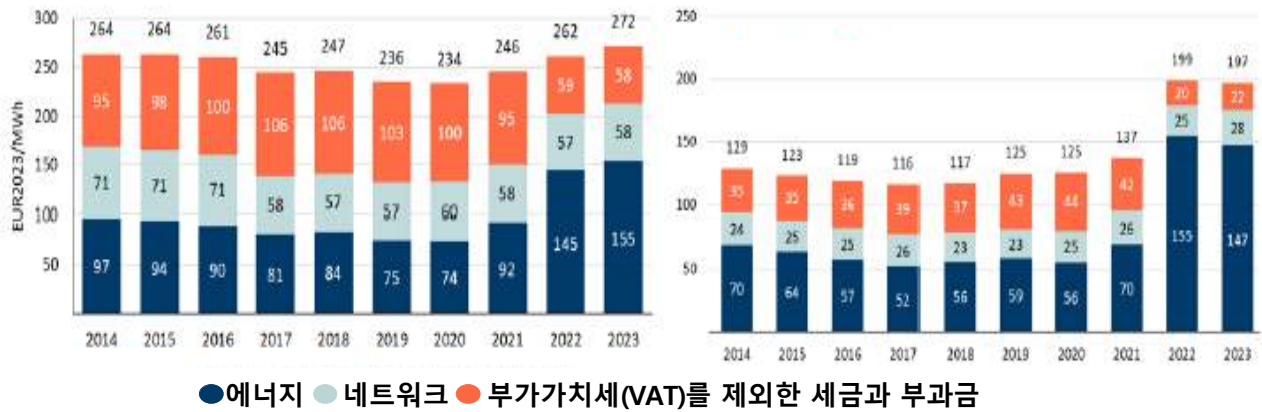


자료 : EU 집행위원회(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 통신문)

① 에너지 가격 인하(Lowering Energy Costs)

- 집행위원회는 단기적인 에너지 가격 인하를 위해 각 회원국이 에너지 가격에서 세금과 네트워크 비용을 인하하도록 입법 제안 및 권고 사항 발표 예정, 이를 통해 즉각적인 에너지 요금 인하 유도 계획

<'14~'23년 EU의 가정용 에너지 가격 구조(좌)와 산업 에너지 가격 구조(우)>



●에너지 ●네트워크 ●부가가치세(VAT)를 제외한 세금과 부과금

자료 : EU 집행위원회(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 통신문)

- 전기 공급 비용 절감을 위해 장기 계약을 촉진하고, 가격 변동성이 큰 가스요금과 전기요금을 분리하는 정책 추진하며, 역내 전력 유연성 확보*를 위한 프로젝트의 인허가 절차 단축 추진 예정
 - * 재생 에너지·에너지 저장·그리드 개선을 통해 전력 유연성 확보 시 EU 평균 도매 전기가격 40% 절감 기대
- 집행위원회는 역내 가스 수요를 통합하고 EU의 구매력을 활용한 LNG 공동 구매 및 장기 계약 등 공급업체와의 협상에서 EU가 유리한 옵션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특히 LNG 생산국 인프라에 투자지원 정책을 시행 중인 일본을 예로 들며, 민간 투자자에 대한 우선 대출 등 지원 방안 검토
- 한편 에너지 소비 절감을 위해 유럽 차원에서 에너지 효율 솔루션을 제공하는 기업을 지원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도 확대*할 예정
 - * EU 에너지 라벨링 지침과 에코디자인 규정 업데이트 예정

<에너지 비용 인하(Pillar I) 관련 행동 및 추진 일정>

행동 1. 전기요금 인하 (Action 1 : Making electricity bills more affordable)	
· 네트워크 요금 효율화 및 인하	'25년 2분기
· 전기 과세 인하 및 청구서에서 비(比)에너지 비용 항목 제거 (에너지 과세지침 개정)	'25년 4분기
· 시민들의 에너지 전환 참여 및 에너지 연합의 사회적 차원 강화 (시민 에너지 패키지 제안)	'25년 3분기
행동 2. 전기 공급 비용 절감 (Action 2 : Bring down the cost of electricity supply)	
· 소매 전기요금과 변동성이 높은 가스 가격 분리 (EIB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 및 차액정산계약(CfD) 설계에 대한 지침서 제안)	'25년 2분기 '25년 4분기
· 에너지 전환 가속화를 위한 인허가 시간 단축	'25~'26년
· 전력 그리드 확장, 현대화, 디지털화 가속화(유럽 그리드 패키지)	'26년 1분기
· 에너지 저장 장치 구축과 수요 대응 통한 전력 시스템 유연성 강화 (청정 산업에 대한 국가 지원금 프레임워크 개정 및 전력 수요반응제도 규칙 제안)	'25년 2분기 '26년 1분기
· 소매 계약에서 유연성에 대한 보상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 마련	'25년 4분기
행동 3. 가스시장의 원활한 기능 보장 (Action 3 : Ensuring well-functioning gas markets)	
· 가스 시장의 원활한 기능 보장	'25년 4분기
· EU의 구매력을 활용해 수입 천연가스의 구매단가 인하 모색	'25년 1~2분기
행동 4. 에너지 효율성 강화 (Action 4 : Energy efficiency-delivering energy savings)	
· 유럽 차원의 에너지 효율성에 대한 금융 연합 조성	'25년 3~4분기
· 에너지 효율적이고 수명이 긴 가전제품에 대한 소비자 접근성 확대 (관할당국의 시장감시 강화 및 EU 에너지 라벨링 및 에코디자인 규정 업데이트)	채택 시
*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의 행동별 추진 정책 중 청정산업딜의 주요 행동(Flagship action)으로 언급된 정책은 파란색 표시	

② 에너지 연합 구축(Completing the Energy Union)

- EU는 지속적으로 역내 에너지 시장 통합을 추진 중이나, 불완전한 통합 때문에 국가 간 상호 연결성, 에너지 용량, 시스템 유연성 부족 등의 문제로 비용 발생
 - 이에 집행위원회는 앞선 REPowerEU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전기화 및 산업·운송·건축 냉난방 부문 탈탄소화를 지원하고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공공 자금을 활용한 리스크 완화 전략*을 추진할 예정
- * '25년 중 청정에너지 투자 전략 제안 계획

<참고 : EU의 REPowerEU 정책>

- '22년 러-우 사태 이후 집행위원회는 대러 화석 연료 의존도를 단계적으로 감축하고, '30년까지 러시아 에너지 수입 전면 폐지를 추진하는 에너지 안보 전략으로 REPowerEU 채택('22.5월)
- (주요 내용) △에너지 절약,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 △재생에너지 가속화를 목표로 기존 에너지 효율성 지침(EED, Energy Efficiency Directive)을 신규 개정하고, 에너지 공동구매 매커니즘 개발 및 가스 공동구매 협상, 태양광·수소·바이오 메탄 등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개별 전략 추진

- 또한, 집행위원회는 에너지 연합을 촉진하기 위해 '25년 중 태스크포스를 출범하고, 전력시장 통합 백서 발행, 에너지 연합 거버넌스 규정 개정 및 원자력 실태 프로그램* 업데이트 등 계획

* 원자력 실태 프로그램(PINC, Nuclear Illustrative Programme)은 유라툼(유럽 원자력 에너지 공동 개발 정책) 조약 제40조에 명시된 요건으로 핵에너지 동향에 대한 산업과 시민을 포함한 범사회적 논의 기반을 제공하는 보고서

<에너지 연합 구축(Pillar II) 관련 행동 및 추진 일정>

행동 5. 에너지 연합 완성 (Action 5 : Completing the Energy Union)	
· 에너지 연합 태스크포스 출범	'25년 중
· 투자 격차 해소 및 민간 자본 동원	'25년 2분기
· 보다 통합된 에너지 시장 구축	'26년~'27년 중순
· 에너지 연합을 위한 투자 확실성·간소화된 거버넌스 체제 제공	
· 전기화 강화	
· 에너지 부문의 디지털화 및 AI 사용 확대	
· 가스 에너지 대체를 위해 냉난방 부문 탈탄소화 및 통합	

③ 투자유치 및 실행 보장(Attracting Investment and Ensuring Delivery)

-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프로젝트 개발이나 투자가 지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EU는 정부, 에너지 생산기업, 소비기업을 연결하는 우호적 투자 환경 조성해 저렴한 산업용 에너지 공급 촉진 예정
- 특히 역내 재생에너지 육성을 위해 유럽 풍력·태양광 현장* 수립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 전환의 핵심 부문 가치사슬 구축을 위해 정부와 경제 주체 간의 협력을 강조

- * EU는 재생 가능 에너지 확대를 위해 역내 회원국, 해당 산업 기업과 현장을 통해 구체적인 이행 조치를 수립하고 협력 추진. 현재까지 유럽 풍력 현장('23.12.19)과 유럽 태양광 현장('24.4.15) 수립
- 향후 집행위원회는 수소, 합성연료, 배터리, 해상 풍력, 태양광, 전력망 등 저렴한 산업용 에너지 계약 체결을 위해 금융기관, 에너지 기업, 에너지 소비기업, 공공부문 포함 광범위한 제3자 계약 추진 계획

<투자유치 및 실행 보장(Pillar III) 관련 행동 및 추진 일정>

**행동 6. 유럽 산업의 저렴한 에너지 수급을 위한 제3자 계약 체결
(Action 6 : Establishing a tripartite contract for affordable energy for Europe's industry)**

· 저렴한 에너지를 위한 제3자 전력 거래 계약 추진 (전력구매 계약시 중소기업-에너지 집약 산업 에너지 구매자에 대한 금융 보증 제공하는 EIB 시범 프로그램)	'25년
* 적정가격 에너지 행동계획의 행동별 추진 정책 중 청정산업딜의 주요 행동(Flagship action)로 언급된 정책은 파란색 표시	

④ 잠재적 에너지 위기 대비(Being ready for Potential energy crises)

- 에너지 가격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학적 긴장, 사이버 공격, 고의적 시장 왜곡, 기상이변 등의 유사시에 에너지 공급 중단을 방지하고 가격 변동성 억제 수단 마련
- 이를 위해 집행위원회는 공급 위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에너지 가용성 향상을 위해 에너지 보안 프레임워크 개정과 소비자 보상 인센티브 도입을 통한 피크 수요 저감 제도 및 관련 지침 개발 예정

<잠재적 에너지 위기 대비(Pillar IV) 관련 행동 및 추진 일정>

**행동 7. 가격 안정을 위해 공급 안정성 확보
(Action 7 : Ensuring security of supply for price stability)**

· 에너지 가격 안정 기여 위한 에너지 안보 프레임워크 개정	'26년 초
-----------------------------------	--------

행동 8. 가격 위기 대비 (Action 8 : Price crisis preparedness)

· 에너지 위기 시 피크 수요 절감을 위한 제도 및 지침 개발	지속적으로 개발 및 에너지 가격 급등 시 발표 예정
· 저렴한 전력에 대한 국경 간 접근성 향상	특정 지역의 가격 상승 등 필요시

IV **옴니버스 패키지**

※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I, II)

: EU 집행위원회 보도자료([링크](#)), Q&A([링크](#)), 옴니버스1-ESG([링크](#)), 옴니버스2-투자([링크](#))

I. 옴니버스 I - ESG

□ 개요

- 2.26일, EU 집행위원회는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을 간소화한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Omnibus package 1)'를 발표
- EU는 과도한 규제가 유럽 기업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판단해, '규제 간소화'를 통해 기업의 불필요한 의무를 줄이고 부담 완화 추진
 - * 규제 간소화는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유럽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수립된 'EU 경쟁력 나침반' 이니셔티브('25.1.29)의 주요 실행 방안 중 하나

<참고 : EU 경쟁력 나침반(EU Competitiveness Compass)>

- '24~'29년 집행위원회의 업무 방향이 담긴 이니셔티브로, 3대 핵심 과제와 5개 실행 방안 제시
 - (핵심 과제) ①혁신 격차 해소, ②탈탄소화·경쟁력 강화 위한 로드맵, ③역외 의존도 축소 및 경제안보 강화
 - (실행 방안) △**규제 환경 간소화**, △장벽 제거를 통한 단일시장 강화, △저축·투자 연합 구축 및 금융 경쟁력 증대, △노동역량 강화·사회적 형평성 보장, △역내 정책 조율 개선

- EU 집행위원회는 대기기업과 중소기업(SME)의 보고 및 행정 부담을 각각 25%와 35% 감축하는 목표를 설정했으며, 이를 통해 약 375억 유로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단,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옴니버스 패키지는 집행위원회의 제안 (proposal)이며, 입법 과정에서 변경 사항 발생 가능

1 공급망 실사 지침(CSDDD)

□ 개요

- 공급망 실사 지침*은 일정 규모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 분야 내 실사 이행 후 공시를 의무화하는 지침으로, '24.7.25일부 발효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CSDDD) EU 2024/1760
-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기업 적용 시점 및 회원국 입법 전환 시한 연기, 실사 범위 축소, 중소·중견기업 보호 강화, 기후 전환 계획, 민사책임 조항 등에 대한 개정을 제안

□ 주요 변경 사항

- (시행 일정) 회원국의 자국법 입법 전환 시한을 1년 연장, '27년부터 적용될 예정이었던 초대형 기업에 대한 일정 삭제 제안
 - (회원국 전환) 회원국별 지침 입법 전환 마감 시점을 기존 '26.7.26일 → '27.7.26일로 연기
 - 초대형 기업(직원 수 5천 명, 매출액 15억 유로 초과) 적용 조항을 삭제하고, '28.7월부터 연 매출 9억 유로 초과 기업에 적용 개시

<개정된 기업 적용 시기>

대상 기업	실사 의무	공시
(역내) 직원 수 3,000명 초과 및 전 세계 매출 9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28.7.26일부터	'29년
(역외) EU 내 매출 9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역내) 직원 수 1,000명 초과 및 전 세계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로열티 수익 기업	'29.7.26일부터	'30년
(역외) EU 내 매출 4.5억 유로 초과 기업 또는 최종 모기업, 로열티 수익 기업		

- (실사 범위 축소) 기업의 실사 의무 대상에서 간접 협력사는 제외하고, 실사 범위는 기업 자체, 자회사, 직접 협력사(공급기업)로 한정

- 다만, 객관적인 정보가 있는 경우* 간접 협력사도 실사 대상에 포함하여 인권 및 환경적 리스크에 대한 심층 평가 수행 필요

* (예) 언론 보도나 NGO 제보 등을 통해 해당 협력사의 문제가 드러난 경우 등

(참고) 필요한 경우에 '간접 협력사'에 대해 실사하는 접근 방식은 독일의 공급망 실사법 (LkSG, Lieferkettensorgfaltspflichtengesetz)과 유사한 형태임.

- 한편, 기업이 직접 협력사로 계약 보증(Contractual Assurances)을 요구해 간접 협력사도 행동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는 조항은 유지

- **(중소·중견기업 보호 강화)** 작은 규모의 협력사에 대해 실사 의무 기업이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수준을 제한하고, 기존의 계약 종료 조항을 삭제함.

- (요구 가능 정보 범위) 직원 수 500명 미만 협력사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데이터는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의 자율 보고 기준 (VSME)*으로 제한

* voluntary standard for SMEs로, 집행위원회가 추후 위임법을 통해 채택 예정

(참고) 공급망 매핑을 위해 필요한 정보를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없거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추가적인 식별이 필요한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추가 정보 요청 가능

- (계약 종료 조항 삭제) 협력사의 부정적 영향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기존 지침에서 명시되었던 '계약 종료' 조항 삭제

- 대신, 해당 부정적 영향을 해소하기 위해 '강화된 예방실행계획*'을 수립 및 이행하고, 협력사와 거래를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이행 촉진

* Enhanced prevention action plan for the specific adverse impact

(참고) 강화된 예방실행계획이 이행될 것이라는 합리적인 기대가 있는 경우, 해당 협력사와 거래를 계속한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의 법적 책임이 발생하지 않음.

- **(이해관계자 영향력 축소)** 기존 이해관계자의 범위에서 소비자, 단체, NGO 등을 제외하고, 실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참여가 필요했던 일부 단계도 삭제*

* (삭제)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 개발 참여, 사업 관계의 중단 또는 종료

<이해관계자 관련 개정안 내용>

구분	내용
이해관계자 범위	실사 의무 기업, 자회사, 협력사의 직원·노조·근로자 대표, 기업·자회사·협력사의 제품·서비스·운영으로 인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개인·커뮤니티
실사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참여 단계	- 부정적 영향의 식별, 평가, 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필요 정보 수집 - 예방 및 시정조치 계획수립 및 강화된 예방·시정조치 계획수립 - 시정조치 채택

- **(실사 모니터링)** 기업 실사의 이행 상황을 평가하는 모니터링 주기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

* 단, 실사 조치가 효과적이지 않거나 부정적 영향이 발생할 리스크가 있는 경우 관련 근거가 확보될 때마다 수행

- **(기후 전환 계획)** 기존 기후 전환 계획의 ‘채택 및 이행’ 의무에서 ‘이행’ 의무를 삭제하고, 4대 세부 실행 계획은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implementing actions)’ 수립으로 대체

<기후 전환 계획 관련 비교>

구분	기존 내용	개정 내용
목표	지속 가능한 경제 전환, 파리협정에 따른 지구온난화 1.5°C 감축, 2050년까지의 기후 중립 목표 달성	변경 없음
계획 포함 사항	△2030년 및 2050년까지 5년 단위로 설정한 기후변화 완화 및 온실가스 절대 배출량 감축 목표(Scope 1-3) 설정 △탈탄소화 조치와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조치 설명 △계획을 이행하는 투자·자금 수단 설명 및 정량화 표기 △기업 계획과 관련된 행정, 관리, 감독에 대한 설명	기존의 4개 항목이 삭제되고, 목표 달성을 위한 ‘실행 계획(implementing actions)’ 수립으로 대체
기업 의무	상기 사항을 반영한 기후 전환 계획의 채택 및 이행 의무	상기 사항을 반영한 기후 전환 계획의 ‘채택’만 의무화 (이행 의무 삭제)

- **(민사책임)** 기업의 민사적 책임이 개별 회원국 법률에 따라 결정 되도록 변경되면서, 기존 대비 EU 차원의 책임 부과 기준이 완화
 - 또한, 노조 또는 인권·환경 단체가 피해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조항도 삭제
- **(조화 수준 범위 확대)** 회원국이 EU 지침보다 엄격한 규제를 수립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화 수준(Harmonisation Level) 적용 범위 확대
 - 기존에는 일부 핵심 조항에 대해서만 EU 차원의 기준을 따르도록 제한했으나, 개정안에서는 그룹 차원의 실사, 고충 처리 절차 등으로 적용 범위 확대
 - 다만, 특정 산업·제품·서비스에 대한 회원국별 추가 규제는 허용

<조화수준 조항 비교>

기존 지침 내 조화수준 포함 조항	개정안 조화수준 포함 조항
잠재적·실제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 및 평가(8조 1~2항)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10조 1항)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의 해소(11조 1항)	기업 그룹 차원의 실사 지원(6조), 잠재적·실제적 부정적 영향의 식별·평가(8조 1~4항) 잠재적인 부정적 영향의 예방(10조 1~5항), 실제적인 부정적 영향의 해소(11조 1~6항), 통보 및 고충 처리 절차(14조)

- **(가이드라인)** 실사 이행에 우선적으로 필요한 전반적인 절차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기존 계획보다 앞당겨 '26.7.26일까지 발표할 예정

<가이드라인 발표 일정>

일정	세부 내용
~'26.7.26일 (기존 '27.1.26일)	실사 절차 전반(부정적 영향의 식별, 우선순위 지정, 구매 관행 조정, 예방 및 시정조치, 이해관계자의 식별 및 참여 방법, 통보 및 고충 처리 절차, 모범사례 등)
~'27.1.26 (변동 없음)	고위험 및 부문별 위험 요소 평가, 데이터·디지털 지원 도구 및 기술
~'27.7.26일 (변동 없음)	기후 전환 계획, 기업 간 자원 및 정보 공유, 실사 과정 전반에 걸친 이해관계자와 대리인의 참여

- **(제재)** 벌금의 최대한도로 설정되었던 '전 세계 순매출액의 5%' 기준 삭제, 집행위원회는 벌금 수준을 결정하는 가이드라인 마련 예정

2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 개요

-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온실가스양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 후 제출하는 규정으로, '23.5.17일부 발효
*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Regulation EU 2023/956
-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적용 면제 기준, 인증서 일정, 기본값, 기지불 탄소 가격 등에 대한 개정을 제안

□ 주요 변동 사항

- (면제 기준 변경) 이번 개정안의 핵심으로, 규제 적용 면제 기준을 기존 150유로(금액 기준)에서 연간 50톤(질량 기준) 이하로 변경함.
 - 즉, 전력 및 수소를 제외한 CBAM 적용 대상 수입품(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 연간 50톤 이하로 수입하는 경우, 규제에서 면제됨*
 - * 집행위원회는 관련 수입 기업의 91%가 면제될 것으로 예상

<참고 : CBAM 면제 기준>

- 면제 기준은 개별 HS 코드가 아닌, **CBAM 대상 품목을 수입하는 기업당 연간 50톤임.**
즉, 철강·알루미늄·비료·시멘트 품목을 합산한 연간 누적 총중량이 50톤 미만이면 면제
- (예) A사가 '26년 EU로 철강(30톤), 알루미늄(15톤), 가전제품(20톤)을 수출하는 경우, CBAM 적용 품목(철강+알루미늄) 총량이 45톤이므로 면제됨.

<면제 기준 조정 배경>

- '23.4분기~'24.4분기 CBAM 관련 역내 수입 분석 결과, 수입 기업의 80%가 전체 배출량의 0.1%만 차지하나, 상위 10% 기업이 총배출의 99% 이상을 차지하는 등 편차가 큼.
- 연간 50톤 미만 수입 기업의 수입액(median value 기준)은 약 1,600유로에 그치는 반면, 수입기업별 EU의 행정 부담 비용이 5,440~6,900유로로 행정 비용이 불균형한 상황
- 면제가 예상되는 기업의 74%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총 8.3억 유로의 부담 절감이 예상. 한편, 중소기업이 면제되더라도 전체 배출량의 99%가 여전히 CBAM 적용 범위에 포함되므로, 환경보호라는 원래의 입법 취지는 유지된다는 입장

- 전력·수소의 경우, 특정 대규모 수입자가 시장을 점유(수소는 64개 기업이 총수입의 92% 차지)하므로 해당 면제 기준 적용에서 제외

- **(모니터링 강화)** EU는 중소기업 면제를 확대하는 대신 CBAM 적용 대상 기업들에 대한 규제 준수 관리를 더욱 강화할 예정
 - (수입량 감독) 세관 데이터를 활용해, 연간 50톤 초과 수입 기업이 CBAM 인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행위 집중 감독
 - 적발 시, 해당 기업의 CBAM 관련 제품 추가 수입이 금지되며, 위반에 따른 벌금도 부과됨. 수입을 재개하기 위해서는 공인 수입 신고자 자격 취득 후 인증서를 납부해야 함.
 - (EORI 번호 분할) 기업이 면제 기준에 맞춰 수입량을 여러 자회사·법인으로 분할하고, 각기 다른 EORI 번호를 부여해 수입하는 활동을 방지하기 위한 감독 강화
- **(CBAM 인증서)** 원활한 규정 이행을 위해 인증서의 판매, 제출 시점 등을 연장*했으며, 잔여 인증서 확보 의무 비율을 80→50%로 완화
 - * 인증서 관련 일정은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신규 자체 자원(new own resources)이 추후 확정될 시, 추가적으로 조정될 수 있음.
 - (판매 개시일 연기) CBAM 인증서 판매 개시일을 기존 '26.1.1일 → '27.2.1일부터로 연기하여, 수입신고자가 '26년 배출 데이터를 충분히 수집하고 당국이 규제 이행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응 기간 부여
 - (제출 연장) 인증서 제출 기한을 매년 5.31일 → 8.31일로 연장
 - (인증서 관리) 수입신고자의 과도한 인증서 구매를 방지하고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계정 내 인증서 확보 의무 비율을 80% → 50%로 조정
- **(CBAM 등록부 접근성 개선)** 모기업과 공인 검증자에게 CBAM 등록부(Registry) 접근 권한을 부여해, 배출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기업의 데이터 등록이 용이하도록 지원
 - (모기업) CBAM 등록부에서 모기업이 모든 자회사에 대한 제품 내재 배출 정보 및 검증 보고서를 한 번에 등록할 수 있도록 허용

- (공인 검증자) 검증자가 등록부에서 직접 배출 정보를 검증할 수 있도록 개선. 이에 따라, 검증 보고서의 진위를 보장하고 관할 당국의 수동 검토 부담을 줄여 행정 업무량 감소 기대
- (배출량 산정 : 기본값) CBAM 기본값(Default value)에 대한 사용 요건의 완화, 결정 방식 변경, 검증 면제 요건 등을 설정
 - (사용 요건 완화) 실제 배출량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 경우에만 기본값 사용이 가능했던 조항을 삭제하고, 실제 배출량 또는 기본값 (mark-up 적용) 중 자유롭게 선택하여 보고 가능
 - *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기본값에는 여전히 일정 수준의 추가 보정 비율 (mark-up)이 적용되므로, 탄소 누출 방지 목적에는 영향 없음.
 - (기본값 결정 방식) 기존 역내 최악의 배출시설(상위 X%) 기준이 아닌, 배출 강도가 높은 상위 10개 수출국의 평균값을 기반으로 조정

<기본값 결정 방식 비교>

기존	개정안
수출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기본값은 EU 역내 최악의 배출시설(상위 X%) 평균값으로 설정 * X값은 추후 집행위원회가 마련	수출국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없는 경우, 기본값은 배출 강도가 높은 상위 10개 수출국의 평균값으로 설정

- 또한, 수출국 정부나 기업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시해 EU가 정한 기본값보다 배출량이 적음을 입증할 시, 해당 기본값이 적용됨.
- (검증 면제) 기업이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기본값을 사용하는 경우, 내재 배출량 검증에서 면제
- (지불 탄소 가격) 역외국별 ‘기본 탄소 가격(Default carbon prices)’을 도입해 제3국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 가격에 대한 감면 절차 간소화
 - 즉, 집행위원회는 국가별 연간 기본 탄소 가격을 공개하여, 기업이 지불한 금액에 대해 보다 쉽게 감면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
 - * 기존에는 기업이 탄소 가격 지불 내역을 입증하고, 검증자의 추가 확인을 받아야 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고 부담이 컸음.

(참고) 국별 연간 평균 탄소 가격(€/tCO₂e)을 평가해 기본 탄소 가격을 설정하며, 해당 국가에서 적용되는 리베이트 또는 감면 조치를 반영하여 조정할 예정

- 수입신고자는 △집행위원회가 제공하는 기본 탄소 가격 또는 △ 실제 지불한 탄소 가격* 중 선택하여 공제 신청이 가능함.
- * 실제 지불한 탄소 가격 선택 시 기존 규정과 동일하게 증빙이 필요함.

③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CSRD)

□ 개요

-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지침은 기업이 ESG 정보를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하도록 요구하는 지침으로, 기존 비재무정보 보고지침(NFRD, Non-Financial Reporting Directive)을 대체하며 '23.1.5일부 발효
 - *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Directive(CSRD) EU 2022/2464
- EU 집행위원회는 이번 옴니버스 패키지를 통해 적용 대상 기업, 보고 의무 축소, 이행 시기 등의 개정 제안

□ 주요 변동 사항

- (적용 대상) 직원수 1천명 초과 대기업에만 CSRD 보고 의무 적용 제안, CSRD와 CSDDD의 적용 대상 기업은 CSRD에서 요구하는 보고 외에 추가적인 정보 보고 의무가 발생하지 않음.
 - * 이번 개정을 통해 CSDDD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CSRD의 범위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하여, 두 법률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함.
- (역내 기업) 직원수 1천명 초과하며, 순매출액 5천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총액 2,500만 유로 초과 기업에 한정, CSRD 대상 기업 수 약 80%(5만→1만 개사) 감소 예상
- (제3국 기업) EU 내 순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를 초과하고, 대기업으로 분류된 자회사 또는 지점(순매출액 5천만 유로 초과) 보유

<CSRD 보고 의무 적용 기준 상향 조정>

대상 기업	기존	개정안
비EU 기업의 그룹 차원 보고 의무 기준	역내 연매출 1억 5천만 유로 이상	역내 연매출 4억 5천만 유로 이상
EU 내 지점(branch)	연매출 4천만 유로	연매출 5천만 유로
EU 내 자회사(subsidiary) 기준	대기업, 상장 중소기업 등	회계 지침 내 '대기업 (large undertaking)' 한정

- **(중소·중견기업 보호)** CSRD 적용 대상 제외 기업(직원수 1천명 이하)은 자발적 공시 기준(VSME)*에 따라 보고 가능
 - * Voluntary reporting standard for SMEs(VSME)는 유럽재무보고자문그룹(EFRAG)이 개발한 기준으로, 연내 EU 집행위원회가 위임법으로 채택 예정
 - 또한, 중소·중견기업에 과도한 보고 요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가치사슬 상한(Value-chain cap)을 설정함. 따라서, ESRS에 따라 보고하는 기업은 CSRD 적용 대상이 아닌 공급망 내 기업에게 VSME 표준을 초과하는 정보를 요구할 수 없음.
- **(Opt-in 제도 도입)** 보고의 자율성 및 부분적 보고를 허용하여 기업이 실질적인 지속가능성 목표에 맞게 자율적으로 보고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직원수 1천명 이상이며, 역내 순매출액이 4억 5천만 유로 미만인 기업은 집행위원회 개정안 적용 시 택소노미 보고 의무 면제
 - 단, 위 조건에 부합하는 기업이 자신들의 활동이 EU 택소노미 기준에 완전히 또는 부분적으로 부합한다고 주장하려는 경우에는, 매출과 CapEx KPI 공시는 필수이며, OpEx KPI는 선택 사항
- **(보고 의무 축소)** 부분별 보고 기준 폐지 및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ESRS*) 개정 예정 * European Sustainability Reporting Standards
 - '26년 도입 예정이었던 업종별 보고 기준(부문별 ESRS) 폐지
 - CSRD와 CSDDD 개정안을 포함한 지침 발효 후 6개월 내 개정된 ESRS 채택 목표

- △데이터포인트 대폭 축소 예정(약 70% 감소 예상), △다른 EU 법률과의 일관성 확보, 특히 다른 지속가능성 관련 규제들과 정합성 유지, △ESRS 구조 및 형식 단순화
- (감사 및 검증)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감사 및 검증 계약 체결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제한적 검증(Limited Assurance)에서 합리적 검증(reasonable assurance)으로의 전환 가능성 제외 제안
 - 현재 CSRD는 지속가능성 보고에 대한 제한적 검증을 요구하며, 향후 특정 조건 하에서 합리적 검증 요구로의 전환 가능성을 둠.
 - 집행위원회는 '26년까지 지속가능성 검증 기준을 채택하는 대신, 목표에 부합하는 검증 지침(assurance guidelines)을 발표할 예정
- (이행 시기) 기존 '26년(Wave 2) 또는 '27년(Wave 3)부터 보고해야 했던 기업들의 보고 의무 적용 각각 2년 연기

4] 향후 일정 및 주요 사항 요약

□ 향후 일정

- 이번 EU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옴니버스 법안은 유럽의회와 EU 이사회에서 심의 및 수정 절차를 거칠 예정
 - 일반 입법 절차(OLP, Ordinary legislative procedure)를 따르게 되며, 3자 협의(Trilogue) 형태로 나아갈 것이라는 전망 우세
 - 즉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가 각각의 입장 채택한 후, 집행위원회·유럽의회·이사회가 협상을 통해 최종 문안에 합의하는 방식으로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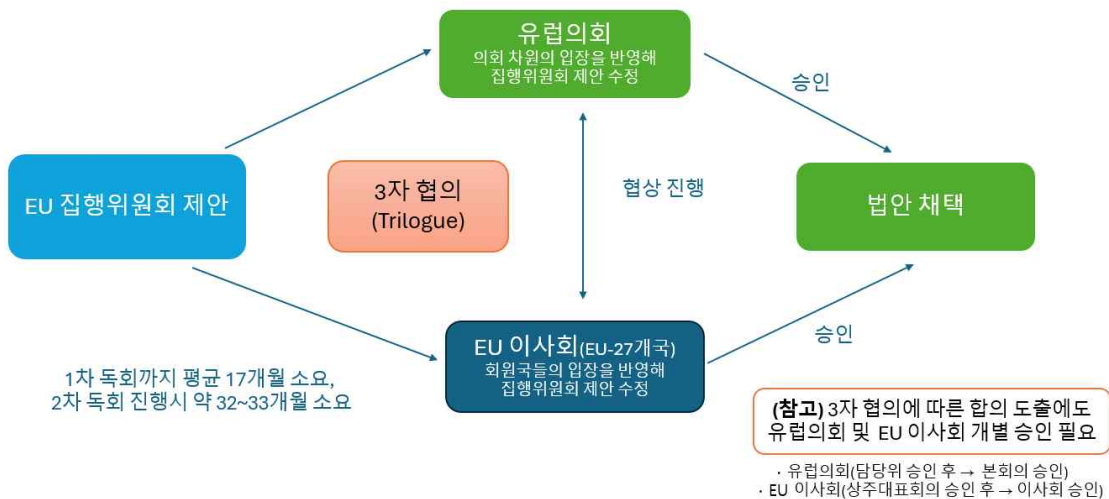
(참고) 3자 협의(Trilogue)는 유럽의회와 EU 이사회 간 조정을 촉진하고 신속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비공식 협의 방식으로, 보통 입법 초기 단계에서 진행됨. 유럽의회·집행위원회·이사회 대표가 참여하여 상호 수용 가능한 타협점을 모색하며, 합의가 도출되면 공식 입법 절차에 반영

<EU의 일반 입법 절차>

단계	내용	관련 문서
1 법안 제안 (Legislative Propos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집행위원회가 법안을 제안하고 유럽의회 및 EU 이사회에 상정 · 필요 시, 지역위원회 및 경제사회위원회에도 송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집행위원회 제안안 (Commission proposal)
2 1차 독회 (First Rea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회가 상정된 법안을 심의 후, 승인하거나 수정하여 EU 이사회로 송부 · EU 이사회는 이를 승인하거나 수정한 후 다시 유럽의회로 회송 · 필요 시, 집행위원회·유럽의회·EU 이사회 간 3자 협의(Trilogue)가 진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이사회 1차 입장 (Council's position at first reading), 일반적 접근(General approach)* * 신속한 합의 도출을 위해 이사회 차원의 입장을 사전적으로 표명한 문서
3 2차 독회 (Second Rea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회는 EU 이사회의 1차 입장을 검토 후 다음 중 하나를 선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승인 → 법안 채택, △거부→ 입법 절차 종료, △수정 → 이사회로 재송부 · 이사회는 유럽의회의 2차 수정안을 검토 후 △승인 (법안 채택), △거부(조정위원회 소집) 중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회의 2차 입장 (Posi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t second reading)
4 조정위원회 (Concili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회와 이사회 간 합의가 어려울 경우 조정위원회 소집 · 조정위원회에서 공동 문안(Joint text)을 도출해야 하며, 합의에 실패하면 법안은 폐기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 문구(Joint text), 두 기관에서 모두 승인 시 법안 확정
5 3차 독회 (Third Rea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조정위원회에서 도출한 공동 문안을 검토 후 승인 여부 결정 · 두 기관이 모두 승인하면 법안이 채택되며, 하나라도 거부하면 입법 절차 종료 	
6 법안 채택 및 공표 (Adoption & Publica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럽의회와 EU 이사회가 최종 승인한 법안은 EU 관보에 게재된 후 발효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안 공식 게재

자료 : EU 이사회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정리

<EU의 일반 입법 절차 도표>



자료 : EU 집행위원회 및 유럽의회 토대로 브뤼셀무역관 구성

- 다만, 유럽의회 내 정당별 입장 차이와 EU 이사회 내 회원국 간 이견으로 합의 도출까지 난항 예상
 - 유럽의회의 경우, EPP(국민당) 등 우파 정당들이 지지하는 반면, S&D(사회당), 녹색당(Greens) 등이 반대 중. EU 이사회의 경우 프랑스와 독일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스페인 등은 반대
- 이 밖에도, EU 집행위원회는 신속한 입법을 위해 CSRD 및 CSDDD 일정 연기를 우선 처리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수용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으로 관련 동향 주시 필요

<지속가능한 옴니버스 패키지 주요 사항 요약>

구분	CSDDD	CBAM	CSRD
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8.7.26일부터 기업(매출액 9억 유로) 적용 후 '29.7.26일부터 모든 대상기업 적용 · 회원국 입법 전환 '27.7.26일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증서의 구매, 제출, 환매, 취소 등 관련 일정 연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SRD 보고기한 2년 연기 · 기존 '26년 또는 '27년까지 보고해야 했던 기업 각각 2년씩 유예
적용 기업 범위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50t 미만의 CBAM 대상 수입*에 대해 면제 * 수소 및 전력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역내) 직원수 1천명 초과 및 순매출액 5천만 유로 초과, 또는 자산총액 2,500만 유로 초과 기업 · (역외) 역내 순매출액 4.5억 유로 이상, 역내 지점 5천만 유로 등
중소·중견 기업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사 대상 범위에 간접 협력사 제외 · 직원 수 500명 미만 기업에 요청 가능 정보 제한 		-
간소화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사 모니터링 주기 1년→5년 · 기후 전환 계획은 '채택만 의무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BAM 등록부 접근 권한 확대(모기업, 공인 검증자) · 기본값 사용 완화 · 수출국별 기본 탄소 가격 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SRS 개정 통해 필요 데이터 항목 대폭 축소 · '26년 도입 예정이었던 업종별 보고 기준 폐지
제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벌금 최대 한도* 문구 삭제 * 전 세계 순 매출액의 5%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ORI 번호 분할 등 우회 행위, 미신고 감독 강화 	-

자료 : 브뤼셀무역관 정리

II. 옴니버스 II - 투자

□ 개요

- EU 집행위원회는 두 번째 투자 옴니버스 패키지로 'InvestEU 등 기존 프로그램 가용 자원 결합하여 공공 보증을 늘리고 관료주의를 간소화할 예정
- (목표) △EU 보증의 규모 확대, △InvestEU의 매력을 높여 회원국들의 투자 유인, △보고 요건 간소화 및 효율성 증대
- (지원 분야) △경쟁력 나침반, △청정산업딜,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지원 중심으로 투자될 예정

- (경쟁력 나침반) '25~29년 EU 집행위원회의 업무 방향이 담긴 이니셔티브로, ①혁신 격차 해소, ②탈탄소화-경쟁력 강화 위한 로드맵, ③역외 의존도 축소 및 경제안보 강화를 위한 이니셔티브
- (청정산업딜) 기존 EU의 기후 중립 목표를 유지하며 EU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 (스타트업 및 스케일업) △스타트업이 단일 시장 내 스케일업하는 데 장애물 제거, △파트너십, 상업적 기회 및 기술에 대한 기회 창출, △금융에 대한 접근 촉진

- 이외, 디지털 혁신 및 전환, 우주 자산, 이중용도 활용 또는 군사 이동성 등 방위 산업 정책, 고도의 혁신성과 위험성을 가진 프로젝트 등에 투자될 예정

□ 주요 내용

- EU 보증의 규모 확대
- 공공 및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총 500억 유로 이상의 자금 확보
- (재정 보증) 기존 프로그램의 가용 자원*을 InvestEU 펀드와 결합하여 25억 유로를 추가 조성해 총 기금 규모를 287억 유로로 확대할 것을 요구

- * 유럽 전략적 투자기금(EFSI), 유럽 연결 시설(CEF), InnovFin, 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쟁력(COSME)
- (민간 투자) 재정 보증의 증가에 따라 250억 유로의 공공 및 민간 투자가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기대
- 회원국들의 투자 유인
 - (투자 격차 해소) 중앙 차원에서 설계된 금융 상품을 활용하여 예산 자금 사용을 검증하고 원활히 작용하는 유통 채널을 제공함으로써 국가별 투자 격차 해소
 - 특히, 회원국들이 회복 및 복원력 계획(RRF)과 구조적 기금에 따른 투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이행 속도 높이기
 - (출자 방식) 유로 외 다른 통화로 출자 가능한 펀드형 주식 상품과 부채 상품 제공
- 보고 요건 간소화
 - (보건 요건 세부사항) ①보고 빈도 감소, ②이행 파트너의 투자 장벽에 대한 연간 보고서 작성 의무 삭제, ③소액 거래 관련한 보고할 항목 축소, ④중소기업 정의 조정*
 - 특히 소기업 대상으로 ③, ④번 항목은 면제되며 비용 절감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예정
 - (효율성 향상) ‘비입법적(non-legislative)’ 조치를 통해 추가적인 단순화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계약적 단순화(contractual simplification)’를 통해 기업의 보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
 - (공개 의무화) 최소 100만 유로를 수령한 기업만 ‘최종 수령자’로 공개하도록 의무화

참고

KOTRA 브뤼셀무역관 발간 보고서 (※ 제목 클릭 시 이동합니다.)

◆ EU 경제통상 현안을 빠르게, 경제통상 리포트 (과거 리포트 : [해드림 글로벌이슈모니터링](#))

발간번호	제목	발간시기
25-09	유럽 청정산업딜(Clean Industrial Deal) 주요 내용	2025. 3월
25-08	EU 집행위원회, 공급망 실사 간소화 개정안 발표	2025. 2월
25-07	EU 집행위원회, 차기 7년 EU의 예산(MMF) 개혁 방향 공개	2025. 2월
25-06	EU 포장 포장재 폐기물 규정(PPWR) 2.11일부 발효	2025. 2월
25-05	EU 천연가스 수급 동향 및 전망	2025. 2월
25-04	EU 경쟁력 나침반(Competitiveness Compass) 주요 내용 및 전망	2025. 2월
25-03	EU의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및 업계 동향	2025. 2월
25-02	미국 신정부 출범에 대한 EU 반응	2025. 2월
25-01	미국의 그린란드 매입 구상에 대한 EU 반응	2025. 2월
24-35	EU의 산림전용방지법(EUDR) 개정과 규제 이행 지원 조치	2024. 12월
24-34	EU-메르코수르 파트너십 협정 타결	2024. 12월
24-33	EU 사이버 복원력법(Cyber Resilience Act)의 주요 내용	2024. 12월
24-32	EU의 규제 완화 및 경쟁력 강화 동향	2024. 12월
24-31	EU의 ESG 주요 규제와 향후 정책 방향	2024. 12월
24-30	EU의 화학물질 분류, 라벨링 및 포장(CLP) 규정 개정안, 12.10일부 발효 예정	2024. 12월
24-29	EU 디자인법 개정 패키지, '24.12.8일부 발효 예정	2024. 12월
자료24-093	우리 기업을 위한 EU ESG 통상 정책 대응 가이드북	2024. 11월
GMR24-038	EU 산업별 관련 법규 동향 (2) : 자동차, 배터리, 반도체, 가전, 플라스틱, 식품, 의료제약	2024. 10월
GMR24-037	EU 산업별 관련 법규 동향 (1) : 화학, 철강, 원전, 수소, 전력, 디지털	2024. 10월
자료24-081	EU 에코디자인 규정 Q&A북	2024. 9월
24-27	중국의 對EU 투자와 EU의 대응 동향	2024. 9월
24-26	2024년 상반기 EU 풍력발전 산업 동향	2024. 9월
24-25	EU의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동향	2024. 9월
24-24	EU 핵심원자재법(CRMA) 주요 내용과 전략 프로젝트 신청방법	2024. 9월
24-23	패션업계가 주목해야할 EU ESG 관련 법안 및 동향	2024. 9월
24-22	EU 에너지 정책 이행 현황	2024. 9월
24-21	EU DMA 및 DSA 관련 조사 현황	2024. 9월
24-20	차기 EU 집행위 정책 공약집을 통해 살펴보는 EU 정책 방향	2024. 8월

작 성 자

- 브뤼셀무역관 강지숙
김도연
심은정
윤윙희
유지원

新 EU 집행위원회의 정책 추진 방향

Global Market Report 25-007

발행일	2025년 3월
발행인	강경성
발행처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주소	서울시 서초구 헌릉로 13
전화	1600-7119
홈페이지	www.kotra.or.kr
문의처	브뤼셀무역관(+32-2-205-0089)

• ISBN : 979-11-402-1295-8 (95320)



kotra
Korea Trade-Investment
Promotion Agency